

산학현장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한림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과 _____ (이하“기관”이라 한다) 상호간의 산학현장실습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및 장소, 업무내용) 산학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학현장실습 기간 및 산학현장실습 장소(근무부서)는 신청내용과 같이 한다.
2. 업무내용 : 업무내용은 산학현장실습프로그램 참가 신청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3조(의무사항)

1. 참여 기관의 의무 : 산학현장실습 참여 기관은 현장실습과정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학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참여 학생의 의무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산학현장실습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 ② 산학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규칙을 준수한다.
 - ③ 산학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3. 학교의 의무 : 학교는 산학현장실습과정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기관과 협력하며,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산학현장실습프로그램의 근무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연수수당) 산학현장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의 산학현장실습운영규정에 의하여 산학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 기관도 실습학생에게 별도로 실습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사항으로 한다.

제6조(근태 및 평가)

1. 기관은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근상황 기록부를 매일 작성하고, 산학현장실습 종료 시 산학현장실습 실습기관 평가서를 작성하여 산학현장실습 종료와

함께 학교에 통보한다.

2. 기관은 참여 학생의 근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

1. 학교는 산학현장실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참여 학생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한다.

2. 기관은 산학현장실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참여 학생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다.

제8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한림대학교 총장과 참여기관 대표가 날인한 날부터 발효하며,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9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산학현장실습 참여기관과, 한림대학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산학현장실습 참여기관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 (인)

한림대학교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 총 장 : 김 중 수 (인)